

월요광장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자의식이 강한 요즘 사람들에게 주인으로 살래? 노예로 살래? 라고 묻는다면 듣게 될 답은 뻔하다. 주인의 삶이 아니고 노예의 삶을 자발적으로 택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사람은 마땅히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예는 무능하고 의존적이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고 배우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말에 따르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단순히 지배와 복종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주인과 노예의 사이에서 ‘변증법’이라는 묘한 원리가 작동하면 무능한 노예가 주인보다 더 똑똑해져서 ‘노예의 역습’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헤겔은 ‘정신현상학’(1807)이라는 그 어렵기로 유명한 책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변증법의 작용이라고 말한다. 소문과는 달리 헤겔이 풀어 가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

그렇게 노예가 주인이 된다

한 논리는 어렵기는커녕 명쾌하고 단순하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관계를 현실에서 목격하기 때문일까? 그의 논리는 지금 우리가 비싼 값을 치르면서 학습하고 있는 ‘공주와 시녀’의 왜곡된 관계에서도 문제의 핵심이 드러난다.

헤겔에 의하면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힘의 관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결정적인 변화를 겪는다. 주인과 노예는 처음에는 흔히 그런 것처럼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만나지만 어느 사이에 주인과 노예의 위치가 바뀌면서 주인이 노예가 되고 노예는 주인이 되는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헤겔의 주장에서 중요한 대목은 주인의 자격이다. 이유 없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뒤바뀌는 것이 아니다. 주인이 자신이 부리는 노예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주인의 무능함이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설명 처음에는 자격을 갖춘 주인이라도 주인이 된 후에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주인이 되고 나서는 직접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주인의 주변에는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충직한 노예가 있지 않은가. 주인이 하는 것은 함몰여 노동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가 열심히 거뒀돌인 탐스러운 ‘소득’을 소비하며 노예를 더욱 독려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인은 생산자가 아니고 철저하게 게으른 소비자로 변한다.

또한 주인은 노예의 노동으로 살기 때문에 복종을 잘하는 노예에게 가까이 자신의 권한을 나눠 준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주인의 비극과 몰락이 시작된다.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할수록 주인은 점점 나태해지고 무능해지며 열등해진다. 모든 것을 노예에게 맡기고 할 일 없이 반동대는 주인에게 일어나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다. 결국 주인은 노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점점 무능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마침내 주인은 노예의 생각과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주인은 이틈만 주인일 뿐 노예의 도구로 전락한다.

반면에 노예는 주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한다. 노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조건 복종하는 것임을 잘 안다. 그러면서 노예는 주인의 절대적 인정과 신뢰를 받게 되고 점차 주인의 권한과 힘을 공동 소유하고 행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은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고 무기력해진다. 하지만 주인이 무능해질수록 이에 비례해서 노예의 능력과 힘은 커지며 노예는 주인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에 이른다. 결국 노예는 주인보다 더 주인다운 주인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것이 헤겔의 주장이다.

이러한 헤겔의 주장은 주인의 자리가 유통적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주인의 자격이 타고난 자연 상태의 신분이나 특정한 사람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

이다. 따라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인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보다도 노예에게는 없는 주체적인 사고 능력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책임감이다. 또한 주인의 능력은 한순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헤겔의 변증법이 작동되면서 주인은 노예에게 모든 권한을 내주고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주인이 노예의 노예가 되는 어이없는 상황은 유감스럽게도 그 민망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공주와 시녀’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복종 잘하는 노예를 부리고 싶거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가까이 노예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직장과 가정에서, 주변 사람과의 사이에서 주인과 노예의 구조는 계속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누군가를 소유물로 여기는 주인과 누군가의 부끄러운 노예이고자 할 것인가?

이제 함께 겪은 고통스러운 터널을 벗어나 새로운 시작의 시간을 맞는다. 주인과 노예라는 낡은 시대의 관계방식을 청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의 삶을 시작할 때다. 정신과 몸의 부당한 예속을 거부하며,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복종도 강요하지 않는 자유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주인으로서의 삶 말이다.

기 고



민 형 배
광주 광산구청장

“새 정부가 좋은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에 나선다면… 노동자들도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와 임금을 나눌 수 있다.”

지난 14일,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내놓은 제안이다. 언론보도를 보면서 믿기지 않아 거듭 알아봤다. 사실이었다. 감히 나는 생각했다. 대통령 탄핵에 비금가는 뉴스라고. 탄핵이 낡은 것을 청산하는 혁명이었다면,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명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이제 ‘사용자’가 답할 차례다.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하철공사, 국민연금공단 등이 소속돼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사용자’는 정부다.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답을 해야 할 가장 실질

일자리 나눔, 대선주자들이 답할 차례다

적인 주체는 대선주자들일 수밖에 없다. 최근 민주노총은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대선 정책과제로 내놓았다. 한국노총도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시간의 근무를 폐지하고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자”는 구체적 인안을 내놓으면서 ‘임금 감소’를 감내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심각한 수준이다. OECD 평균 연간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은 2113시간 동안 일한다. 사용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 ‘갑담척 갈등’의 결과다. 사용자는 추가고용을 회피하고 노동시간 연장과 비정규직 남용으로 인건비를 절약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총액의 상승을 수용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동일노동을 하고도 임금차이가 최대 5배까지 나는 심각한 수준의 ‘노동의 양극화’가 발생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저녁이 없는’ 팍팍한 삶을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여건은 사회적 연대의 기반을 깨뜨리고 시민적 참여의 기회를 박탈한다. 장시간 노동은 사회를 파괴한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두 개의 과제가 있다. 첫째는 일자리 창출, 둘째는 기왕

에 있는 일자리의 개선이다.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다. 일자리 개선은 사용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 사용자 측의 수용이 어렵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는 자연스레 ‘창출’된다. 문제는 ‘개선’이다. 정규직 노동자가 임금총액 기록권을 포기하고 만 들어 낸 신규일지리를 사용자가 저임금·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로 채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이 현실화되려면 노동계의 ‘나눔’에 상응하는 사용자 ‘나눔’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를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테이블이 꼭 필요하다.

노동계가 임금 삭감을 수용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제안 자체가 공공운수노조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도 높다. 노·사·정이 만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이 경우 ‘사=정’이다. 합의를 위한 논의의 테이블이 훨씬 간결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와 정부가 합의하면 청년정규직 일자리 5만3000개가 나온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거나,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도입하면 최대 77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노동사회연구소 2017.1.)

현재의 산업기반을 그대로 두고 법과 제도에 변화만 주어도 일자리 문제를 상당한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적정노동시간이 보장된 좋은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다. 나눔을 통한 일자리는 연대와 참여의 기반을 넓혀 사회를 생동감 있고 따뜻하게 만든다. 파괴된 사회를 재생시킬 수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내수 확대로 상쇄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국내의 사례가 있다. 1980년대에 네덜란드는 노·사·정 합의한 ‘바세나르 협약’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실현했다. 1990년에 한국의 유한김벌리는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바뀌 일자리를 늘렸다. 2000년대 독일의 폭스바겐사의 노·사는 신규공장 임금을 ‘적정임금’으로 합의해 고용을 늘렸다.

‘장미꽃 대선’에 뛰어난 각 정당과 주자들은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해 사회적 합의의 테이블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적용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넓힐 공리를 해야 한다. 나는 이 작업에 열정적인 대권주자를 지지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여기에 한국사회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법조칼럼



구 진 미
광주지검 검사

“검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저도 피해자인 것 같은데 피해자라고 말도 못하고…” 전화 금융 사기, 일명 보이오피싱 사건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라며 나에게 억울함을 호소한다.

피해자가 말하는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린 업체에 연락했더니 자신들은 홍콩에 있는 명품 판매업체인데 광주에 지점을 낼 계획이라 미리 직원 채용을 하고 있다

내가 보이오피싱 인출책이라고요?

고 설명했고, 채용되었으니 앞으로 급여를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단다. 그리고는 광주점이 개점하기 전 미리 광주에서 명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그 예약금을 피의자의 계좌로 받을 것이니 그 돈을 인출해 본사 직원에게 건네달라고 하기에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본사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다고 한다.

통장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와 같은 실물이 오고 갈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이 되고 그 처벌 수준도 점차 강화되어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보이오피싱 조직원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대포통장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번호 정도만 파악한 후 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접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수법까지 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통장을 보내주지 않고 계좌번

호를 알려주었을 뿐인 이 피의자의 경우도 보이오피싱 가담자로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행위로 어떤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인용하고 행위로 나아간 경우,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

이 같은 사례의 경우라면 피의자가 그 업체가 실존하는 회사인지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고, 아직 출근도 하지 않은 예비 직원의 계좌로 고객의 회사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돈을 송금받아 인출한 횟수가 많고, 그 금액이 객역이며, 인출한 돈을 비밀리에 본사 직원에게 건네주도록 지시를 받거나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만한 말을 들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될 돈이 범죄의 수익금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인출행위를 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보이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단순한 가담자라고 할지라도 엄격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생활이 어려워 구직이나 대출을 알아보다 자신도 모르게 인출책이 되어 버렸다’며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보이오피싱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뭇랐어요’라는 피의자들의 변명을 그대로 믿고 마냥 선처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양도·대여한 통장으로, 내가 함부로 제공한 금융정보로 인해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고, 통장을 직접 넘겨주지 않더라도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보이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社 說

박승춘 보훈처장 이제 물러남이 어떠한가

재임 기간 내내 ‘5·18 모독’ 논란을 일으킨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이번에는 태극기 집회에 보훈단체 참여를 독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퇴진요구를 받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박 처장이 최근 보훈단체 대표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라고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실이라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보훈단체가 앞장서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 단체장의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박 처장의 공식 답변은 아직까지 없다.

박 처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5·18 관련 세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박승춘 체제로는 올해 5·18 기념식을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보훈처가 매년 4월에 ‘5·18 정부 기념식’ 일정을 확정한다는 점

을 들어 새 대통령 취임 전에 사퇴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우 세력을 등에 업은 박 처장은 2011년 2월 취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무려 세 차례나 국회로부터 해임 촉구를 받았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지난해 6월에는 166명의 야 3당 의원 전원이 해임 촉구 결의안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신임으로 자리를 지켰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해임 촉구 결의 사유 8가지 중 5가지가 5·18 관련이었다. 그는 국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했는데도 3년째 이를 무시하고 제창 거부 등 5·18의 위상을 격하시켜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그가 보훈처장직에 있을 이유가 없다. 박 처장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 길만이 상처를 물론 국민의 마음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 유출·폐기 우려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생산된 기록물 이관 일정이 이번 주 안으로 확정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주 중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세부적인 이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보좌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들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보통의 경우 대통령이 퇴임하기 6개월 전부터 분류작업을 시작하는데 이번엔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을 당하고 황급히 떠나게 된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문제는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 시작되지만 그 절차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각종 기록물 유출·폐기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한 청와대 출입 기록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료

등을 이관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유출하면 사전에 제재할 장치가 없다.

더군다나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언론에 본격 보도된 지난해 9월 이후 청와대가 문서 파쇄기 26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사실까지 드러났다. 청와대는 “사용 연한이 지난 파쇄기를 교체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했으리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는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멈추고 유출·파기·훼손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봉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적극 동의한다. 또한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생활 집을 압수수색할 계획이 없다는 검찰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서둘러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 대통령은 신년 담화를 통해 ‘노인들을 불사의 로봇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생명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존중돼야 합니다’라고 선언했다. 담화 직후,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해 약값과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75세부터는 소염제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됐고 80세부터는 치과 치료, 85세부터는 위장 치료, 90세부터는 진통제에 대해 환급을 못 받게 됐다. 이런 흐름에 편승해 광고 제작자들은 노인을 비하하고 배척하는 ‘반노’(反老) 캠페인을 벌였다. 또 보건복지			
황혼의 반란			
돌아설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6년 뒤 건강보험 적립금은 바닥나고, 그 후엔 매년 20조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내놓은 대책은 소셜 내용과 같이 노인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수준이었다. 물론 보험료는 더 내고, 인구 고령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고, 그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대책 없이 노인 탓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대권 주자들의 공약을 기대해 본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